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
심사 보고

2002. 11. 11.  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2년 10월 30일

○ 회부일자 : 2002년 10월 31일

다. 상정일자 : 제2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02. 11. 8 :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 
심의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주 준 길)

가. 제안이유

물품관리에 있어 불용품의 처분제도를 정보화시대에 맞게  
개선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불용품의 소요조회 시 관보나 공문을 통하여 실시하던 것을  
조달청 및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.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상혁)

#### ○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 
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 방법을 정보화 시대에 맞게,  
인터넷을 통하여 조달청 및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 
개시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 
간소화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동 조례안 제16조 제1항의 「~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 
및 지방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」고 규정하고  
있으나

동조 제3항에는 「~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 
이상인 경우 조달청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 
소요조회를 할 수 있다」고 규정하고 있어,

2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소요조회를 하여야 할 것인지 혼돈이  
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### 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## 6. 수정안 요지

### 가. 수정이유

- 혼돈이 예상되는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.

### 나. 수정 주요골자

- 불용품 소요조회 대상을 “2천만원 이상인 경우”를 “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”로 수정함. (안 제16조 제3항)

## 7. 실사결과 : 수정안가결

## 8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음”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 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-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##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2. 11. 8.

제 안 자 : 김정복 의원외

### 1. 수정이유

- 혼돈이 예상되는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.

### 2. 수정 주요골자

- 불용품소요조회 대상을 “2천만원 이상인 경우”를 “2천만원 이 상인 경우로 하며”로 수정함. (안 제16조 제3항)

##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6조 제3항 “2천만원 이상인 경우”를 “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”로 한다.

## 조문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제1조~제15조 (생략)	제1조~제15조 (개정안과 같음)
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, 축산물,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.	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 (개정안과 같음)
1. ~ 8. (생략)	1. ~ 8. (생략)
② (생략)	② (개정안과 같음)
③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단가 <u>2천만원 이상인 경우</u> 조달청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.	③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단가 <u>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</u> 조달청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.

##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, 축산물,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.

③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 조달청 및 도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</p> <p>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와 임산물, 축산물,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도지사의 결제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제 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 조달청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.</p>	<p>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</p> <p>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, 축산물,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도지사의 결제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제 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 조달청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.</p>

## 관 계 법령

### □ 지방재정법

- 제100조(물품의 처분 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또는 처분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
-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.
- ③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.

### □ 지방재정법시행령

제123조(불용결정)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의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불용결정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.

1.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· 품명 · 규격 · 수량 및 가액
2.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
3. 물품의 사용경위
4.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
5.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여부
6. 처분방법